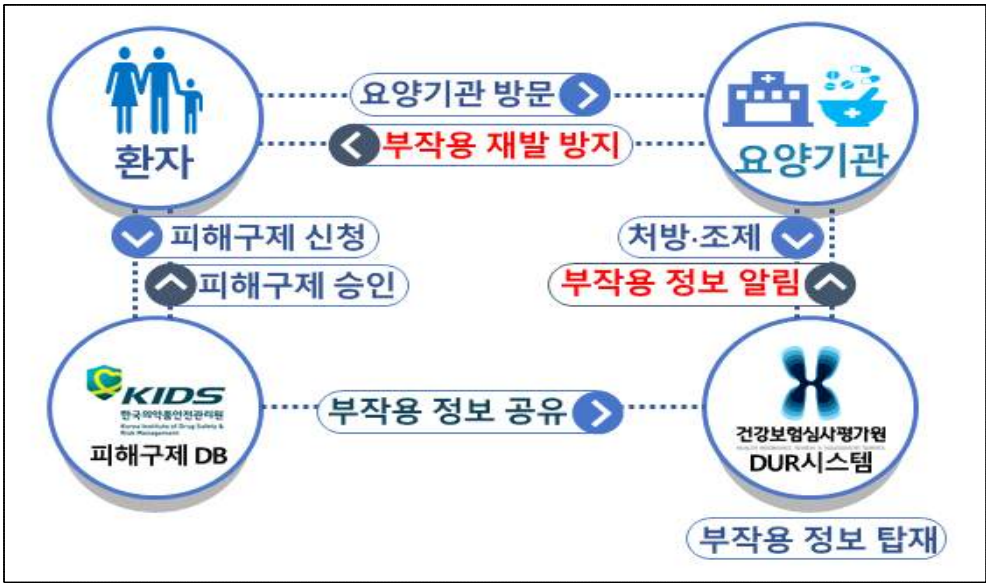


1.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



2. 정보제공 화면 예시

점검 결과

사용종지(처방·조제불가)
 금기·중복의약품(사유기재)
 주의의약품(정보확인, 임부금기 2등급포함)
 약품상세정보(상병)확인필요

정보	구분	DUR점검내역	입력약품	복용약품	예외사유코드	예외사유내용
+	처방비교	피해구제부작용정보	자이로릭정(알로푸리놀)_(0.1g)			

일괄 사유 사용(Text입력시)
 기존DUR점검결과에 따른 사유보기
 *사유입력 필요시 해당 줄 선택
 사유관리

+복용약품 : 구분이 처방전내인 경우에는 입력의품을 말합니다.
 +안전성서한 관련 의약품, 허가사할 주의 의약품은 좌측 체크박스 선택시 오늘 하루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 +점검결과 상세내용

DUR점검내역	피해구제부작용정보				
입력약품	자이로릭정(알로푸리놀)_(0.1g/1정)	성분명	allopurinol		
복용약품		성분명			
1일투여량	총투여일수	처방일자	1900-01-01	조제일자	
약품상세정보	[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알림] 등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. 의약품 성분명: allopurinol/ 부작용명: Stevens-Johnson syndrome / 부작용 발생일: 2017. 3. 25. 관련 약물 투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(의약품 부작용정보 관련 문의: 1644-6223)				
처방기관종별	연락처	처방의료인(병력관리상)	전송시각	1900-01-01 00:00:00	
조제기관종별	연락처		전송시각	00:00:00	
예외사유코드			부가서비스	DUR 약품조회	
예외사유내용				서비스실행	
DUR 기재 사항 점검결과	주상병코드가 올바르지않습니다.				

현재 버전은 030153, 최신 버전입니다. **Update check** 취소 **완료(전송)**

3.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운영 체계

구 분	주요 내용	
추진 체계	<p>신청인 (부작용 피해자)</p>	<p>누구의 과실책임없이(업체, 의사, 약사 등)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자로서 주관기관에 피해 보상 신청</p>
	<p>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</p>	<p>피해구제 부담금 징수·관리 및 피해구제 신청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 등 원인을 규명하고, 그 결과를 부작용심의 위원회(의약·법조계, 공무원 등으로 구성)에 보고</p>
	<p>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</p>	<p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,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피해구제 사실관계 및 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하여 심의</p>
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	<p>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관</p>
진행 절차	<p>The flowchart details the following steps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인 (Applicant) submits an application (① 급여신청). 의약품안전관리원 (Drug Safety Administration) receives the application and conducts a fact investigation (② 사실조사) with the 제조·수입업체 (Manufacturer/Importer) and 의료기관·약국/제조·수입업체 (Medical institutions/Pharmacies/Manufacturer/Importer). The 식품의약품안전처 [사업의 주체] (Ministry) provides 사업위탁 (Task delegation). The 부작용심의위원회 (식약처) (Advisory Committee) is convened within 90 days (③ 심의요청[90일]). Its tasks include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ssessing the causality of the side effect. Deciding on the eligibility for compensation.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ensation amount. The 의약품안전관리원 reports the results (④ 결과통보) to the 식약처 (Ministry). The 식약처 issues a decision (④-2 지문) to the 중앙약사심의위원회 (Central Pharmacists' Advisory Committee). The 의약품안전관리원 issues a decision (④-1 재결정요청) to the 식약처. The 의약품안전관리원 reports the results (④-3 결과통보) to the 신청인. The 신청인 receives compensation (⑤ 피해구제급여 지급(제외) 결정통지). 	
피해 구제 상담 · 신청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상담</p> <p>1644-6223</p> <p>karp.drugsafe.or.kr</p> </div>	